



캘리포니아 주 권익 보호 및 옹호 시스템  
무료 전화 (800) 776-5746

## 지역 센터 청문회 안내서

2015 년 11 월, 발행 #5484.03

이 자료는 지역 센터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안내서는 지역 센터 수요자 중 3 세 이상인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조기 시작 서비스 수요자들(0~3 세 영유아)을 위한 색다른 청문회 절차가 있습니다. 조기 시작 프로그램은 3 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들을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들은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적 내지 정서적 발달 또는 자조 능력 등의 제반 영역에서 발달 지연이 있기 때문에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조기 시작의 청문 권리를 알고 싶으시면 조기 시작 서비스에 대한 사실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시작 및 귀하의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05701.pdf> 을 방문하여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의 특수 교육: 권리 및 의무 매뉴얼 제 12 장을 읽어 보십시오.

**섹션 1 – 지역 센터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지역 센터의 서비스 거부, 중단 또는 축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지침.

**섹션 2 – 부록:** 차트, 문서 자료 견본 및 청문회 판결.

이 매뉴얼에서는 서비스를 거부, 중단 또는 축소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를 대신하는 “귀하”와 같은 자에 대해 다룹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 전화 (800) 776-5746 또는 해당 지역의 Clients' Rights Advocacy 사무소 전화 (800) 390-703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장 – 소개 .....	4
2 장 – 청문 절차 .....	4
충분한 통지 .....	4
청문의 요청 .....	5
이의 제기 기간 중 서비스 유지(“보조금 지급 계류”).....	6
비공식 미팅 .....	6
중재 .....	7
재정 신청.....	7
공정한 청문 .....	8
청문 절차 지속(연기).....	8
통합 .....	10
통역 .....	10
청문 장소의 접근성 .....	10
판사 기피 신청 .....	10
3 장 – 청문 준비 .....	12
법리 파악.....	12
증거 준비.....	12

서면 증거(문서 자료) 수집 .....	12
증인 준비.....	14
증언 명단 및 별첨 자료 교환 .....	14
<b>4 장 – 청문 절차 도중 및 이후.....</b>	<b>16</b>
모두 진술.....	16
증인 심문.....	16
지역 센터 증인.....	16
귀하(요청자)의 증인 .....	17
최종 변론/종결 적요서.....	17
청문 후 .....	18
<b>섹션 2: 부록 .....</b>	<b>19</b>
부록 A: 공정한 청문 플로우 차트 .....	20
부록 B: 판사 기피 신청서 견본.....	23
부록 C: 원고 측 증인 명단 및 증거 목록의 견본 .....	26
부록 D: 원고 측 종결 적요서 견본 .....	28
부록 E: 행정 청문회 판결 .....	36

## 1 장 - 소개

귀하는 아래의 각 경우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요청한 지역 센터 고객이며 해당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요청을 “거부(no)”한 경우
2. 귀하가 이미 받은 서비스를 지역 센터에서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할 경우 또는
3.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귀하에게 없다고 지역 센터에서 말할 경우.

이 매뉴얼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기 3 번의 자격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저희 지역 센터 청문회

안내서(<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57301.pd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지역 센터에서 축소, 변경 또는 거부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 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리는 법적 소송과 다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 심리는 때때로 “공정한 청문(fair hearing)”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청문은 대체로 지역 센터 내 또는 그 부근의 회의실에서 소집됩니다. 이러한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를 일컬어 “행정법 판사”라고 합니다.

청문에 대해 다루는 아래 섹션에서는 청문을 요청하는 방법과 청문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2 장 - 청문 절차

### 충분한 통지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 지역 센터는 개인 프로그램 계획(IPP) 미팅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귀하의 요청을 “거부(no)”할 경우, 귀하는 소송 통지서(NOA)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 통지서에는 조치의 실시 계획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 법령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지문에는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 지역 센터에서 실시할 조치
-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
- 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조치를 실시하는 시점
- 지역 센터에서 주장하는 근거 법률, 규정 또는 정책
- 이의 제기 방법 및 장소
- 이의 제기 시한
- 이의 제기 과정에서 벌어질 상황 안내
- 지역 센터 기록의 검토 방법 그리고
- 지원 제공처.

조치 통지서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반대하는 경우 청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 통지 없이 서비스를 거부,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NOA)를 받아야만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때,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http://www.dds.ca.gov/Forms/FairHearing/DS1805.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문의 요청

청문을 요청하려면 지역 센터에서 NOA 와 함께 송달한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반송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센터로 청문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어디로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해당 지역 센터 및 청문행정처(주소: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에 모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916) 376-6318 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 이의 제기 기간 중 서비스 유지(“보조금 지급 계류”)

지역 센터에서 귀하가 이미 받은 서비스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귀하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서비스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용 중인 서비스를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NOA** 를 수신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 “보조금 지급 계류”라고 합니다. 귀하가 새 서비스를 요청한 후 지역 센터에서 이러한 요청을 “거부(no)”할 경우, 귀하는 보조금 지급 계류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비공식 미팅

공정한 청문 요청 양식을 제출할 경우, 귀하는 청문에 앞서 비공식 미팅 및/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미팅은 청문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 미팅에는 귀하(또는 귀하의 대리인)와 지역 센터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미팅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청문에서 다룰 문제의 가짓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미팅 자리에서 지역 센터 운영자를 만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미팅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미팅을 요청하면 지역 센터에서 미팅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한 청문 스케줄 플로우 차트는 부록 A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평일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지역 센터 측에서 요청자에게 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결정서는 미팅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서는 각 문제에 관한 지역 센터의 결정, 각 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 그리고 지역 센터 측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한 법률, 규정 및 정책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지역 센터 측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귀하는 청문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문 요청은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결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철회하면 됩니다. “결의 통지서”가 지역 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10** 일이 경과하면 해당 결정이 발효됩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후 지역 센터 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예정된 중재 또는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측의 결정을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재

비공식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중재입니다.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는 중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석하지 않는 지역 센터가 많습니다. 요청자가 중재를 요청하고 지역 센터에서 이를 “거부(no)”하는 경우, 다음 단계는 공정한 청문입니다.

중재란 훈련된 독립 중재자가 요청자와 지역 센터 대리인을 만나는 미팅을 말합니다. 중재는 청문 요청 후 30 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중재자는 공통의 기반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중재자는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합의를 도출할 경우, 요청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 절차가 종료됩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청문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구나 중재 절차를 활용할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중재는 요청자와 지역 센터 모두 합의 도출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재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센터의 사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정한 청문에서 요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출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재 생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합니다.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가 중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재 과정을 거칠 때보다 청문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정 신청

재정 신청이란 청문 실시 이전에 행정법 판사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정 신청의 사례로는 공소시효에 따른 기각 신청 또는 소환장에 대한 무효 신청 등이 있습니다. 요청자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 청문에는 행정 절차법(이하 "APA")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정 신청에 대응할 때 이 법은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APA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dgs.ca.gov/oah/GeneralJurisdiction/APAHearings.aspx> 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지역 센터에서는 사건에 대한 기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 신청이란 요청자에게 청문의 권리가 없을 때 청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각 신청은 드뭅니다. 이는 또한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해당 법률과도 배치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예를 들어 서비스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주 법에서 모든 수요자의 특정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사안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공정한 청문

이의 제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공정한 청문입니다. 누군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정한 청문은 청문 요청으로부터 5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요청자와 지역 센터는 공정한 청문 소집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전에 요청자의 별첨 자료(증거)들과 증인 명단을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청문은 청문행정처(OAH) 행정법 판사(ALJ)의 주재 하에 소집됩니다. 청문에서는 지역 센터가 먼저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청문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후에 판결문을 공표합니다.

### 청문 절차 지속(연기)

귀하 또는 지역 센터는 청문일 또는 중재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문일을 연기하려면 “청문 절차 지속 및 시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DDS\\_RFC\\_Form.pdf](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DDS_RFC_Form.pdf)

이 양식의 해당 공간에 해당 청문을 연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OAH 는 청문 절차 지속을 승인합니다. 또한 청문 절차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요청자가 지역 센터 대리인에게 연락해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 대리인에게 질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의 해당란에 요청자와 상당한 지역 센터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담당자가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 동의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선택합니다. 작성된 양식에 서명하기 위해 동 양식을 수신할 지역 센터 담당자의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터만법에 따른 공정한 청문 및 판결을 위한 법정 시한의 철회(Waiver of the Time Set by Law for Lanterman Act Fair Hearing and Decision)”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섹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절차 지속에 대한 요청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청문 시한을 “철회”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요청자가 공정한 청문을 요청한 지 50 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센터 대리인에게 해당 양식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서명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해당 양식을 OAH 에 팩스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청문 절차를 진행할 장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팩스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AH Sacramento: 916-376-6318

OAH Los Angeles: 916-376-6395

OAH San Diego: 916-376-6325

OAH Oakland: 916-376-6323

재정 신청서를 발송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OAH 에 연락해 유선상으로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해도 됩니다.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재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래의 OAH 웹사이트에서 해당 신청건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gs.ca.gov/oah/GeneralJurisdiction/Continuances.aspx>

신청 결과를 검색하려면 OAH 사건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통합

통합이란 공통의 사안 또는 사실 관계가 있는 2건 이상의 청문을 동일한 판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귀하는 통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OAH는 2건 이상의 청문을 통합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에 흔쾌히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아니오(no)”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판사는 랜터만법(Lanterman Act)과 해당 청문 건들의 제반 정황에 근거하여 청문 건들을 통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역

요청자 또는 증인이 통역을 필요로 할 경우, OAH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OAH는 공인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청문 장소의 접근성

청문 장소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청문 장소가 접근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OAH와 함께 사전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청문 출석을 위해 합리적인 숙박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OAH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판사 기피 신청

판사들 중 일부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문에 앞서 담당 판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된 판사에게 편견 또는 선입견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판사 기피 신청서 견본은 부록 B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배정된 판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OAH 웹 사이트

<http://www.dgs.ca.gov/oah/GeneralJurisdiction/Calendar.aspx>(일반 공판 일정표)에 로그인하여 사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판사 배정은 청문 일자가 임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http://www.dgs.ca.gov/oah/DDS Hearings/DDS Decisions.aspx>에 있는 해당 링크로 이동해 판사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판사가 심리한 사건 목록이 표시됩니다. 몇 가지 판례를 읽어 보고 사건 심리를 맡겨도 될만한 판사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족스럽지 않으면 판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피 신청서를 OAH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요청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OAH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 청문에 앞서 OAH에 연락해 기피 신청 건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피 신청은 대개의 경우 승인됩니다.

### 3 장 - 청문 준비

#### 법리 파악

법리란 요청자와 지역 센터가 동의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 근거가 되는 법률과 요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법리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요청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해당 법률을 검토합니다.
- 이전의 공정한 청문 판결들을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검색하고 그 내용을 읽으십시오.

<http://www.dgs.ca.gov/oah/DDS Hearings/DDS Decisions.aspx>.

#### 증거 준비

증거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는 문서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합니다. 요청자는 타당한 증거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가 거부했거나 축소 내지는 폐지하려고 했던 서비스에 대해 이용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라면 타당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증거(문서 자료) 수집

법리의 근거가 될 서면 증거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서면 증거의 일부 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서비스의 목적을 설명하는 IPP
- 요청자에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신 감정 보고서 또는 평가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담당 직원들의 이력서
- 서비스 제공자의 경과 보고서 그리고
- 서비스에 관한 직원 또는 그 외 당사자들의 제반 진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보건 사업자 및 정부 기관들의 기록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지체 없이 요청하십시오. 문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생각보다 더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 자료들 외에도 해당 청문 건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문서(예: 전문가의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자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서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서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자보다는 청문 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를 출처로 한 정보가 증거 능력이 더 있다고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자는 지역 센터가 외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수한 기록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센터에 보관된 모든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열람을 요청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요청자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요청자가 요구할 경우, 지역 센터는 요청자의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의무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파일이 요청자의 청문 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 자료들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을 증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역 센터 측이 그러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 판사도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행정법 판사는 요청자와 지역 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해당 증거를 열람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해당 지역 센터의 서비스 구매(POS) 정책 또는 지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 또는 지침들 중 상당수는 지역 센터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POS 정책들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해당 지역 센터에 연락해 복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서비스의 정의가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증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 절차를 위해 기록물을 제작할 외부 기관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subpoena duces tecum) 절차가 개시되면 외부 기관은 자체 보유 중인 기록물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해당 문서나 기록물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요청자는 진술 또는 직접 증언을 통해 이러한

증언을 수행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의 공정한 청문을 위한 소환장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oah1-subpoena.pdf#search=subpoena%20Form&view=FitH&pagemode=none>.

### 증인 준비

증인의 증언 역시 일종의 증거에 속합니다. 때때로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환이란 증언을 위해 청문에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귀하는 청문 일자가 정해지는 즉시 증인을 소환하고 증언을 요청하여 증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환장 양식은

<http://www.documents.dgs.ca.gov/oah/forms/oah1-subpoena.pdf#search=Subpoena%20Form&view=FitH&pagemode=non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제기될 질문을 미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요청자가 질문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증인의 답변이 요청자의 청문 건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을 검토합니다. 증인들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청문에서 해당 질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질문의 어법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자 또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증인은 요청자 자신이므로 본인의 증언도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서비스가 실패한 이유를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요청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유용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인 명단 및 별첨 자료 교환

귀하와 지역 센터는 달력일 기준으로 최소한 청문 5일 이전에 청문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사본과 가능한 증인 명단을 서로 교환해야 합니다. 즉, 귀하와 지역 센터는 청문일로부터 5일 전까지 문서와 명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증인 명단에는 각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인 명단 및 별첨 목록의 견본은 부록 C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청문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시하지 못한 문서 자료 및 증인 명단을 요청자 또는 지역 센터 측이 소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 4 장 - 청문 절차 도중 및 이후

청문회장에 도착할 때에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오십시오. 청문 절차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물과 간식을 챙겨오셔도 됩니다. 청문 절차 중에 청문 내용을 기록할 펜과 종이도 챙기십시오.

### 모두 진술

귀하는 모두 진술을 해야 합니다. 모두 진술은 필수는 아니지만 행정법 판사에게 해당 청문의 내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두 진술에서는 요청 대상의 서비스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청을 뒷받침하는 해당 법률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정법 판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모두 진술은 그 내용상 해당 청문건을 짧게 요약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에서 먼저 모두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귀하가 진술하면 됩니다.

### 증인 심문

#### *지역 센터 증인*

지역 센터 측 증인이 먼저 증언합니다. 지역 센터가 심문을 마치면 귀하가 지역 센터 측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반대 심문”이라 합니다. 귀하의 심문은 증인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사실 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 측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주의깊게 경청하십시오. 반대 심문 과정에서 나중에 드러낼 약점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에 앞서 귀하가 작성한 반대심문용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법리에 큰 도움이 될만한 답변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한, 증인의



답변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 *귀하(요청자)의 증인*

그런 다음, 귀하의 증인들을 심문합니다. 이를 일컬어 “직접 심문”이라 합니다. 증인은 스스로 직접 행하거나 보거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짧고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질문하십시오.

귀하의 주요 법리를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지역 센터의 증인들이 증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의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에 앞서 귀하가 준비한 질문들을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증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후속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귀하의 증인을 반대심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행정법 판사가 증인들을 직접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증인에 대한 지역 센터의 반대심문이 끝나면 귀하는 귀하의 증인에게 추가 질문을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재직접 심문이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귀하는 반대심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귀하의 증인이 분명히 밝히거나 바꾸어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변론/종결 적요서**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판사에게 전부 제공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에게 "기록 종결 보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기록의 종결 보류에 동의할 경우, 양측은 청문 후에 추가적인 문서와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대체로 청문 종료 시 최종 변론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요약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종 변론은 청문에서 귀하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 귀하에게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할 좋은 기회입니다.

때때로 양측은 구두 최종 변론 대신에 종결 적요서를 이행하기로 동의합니다. 종결 적요서를 선택할 경우, 귀하(요청자)는 본인의 법리를 요약하기 전에 모든 증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결 적요서는 귀하가 제시한 정보와 사실 및 해당 사건의 근거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청문 후 기록 종결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허용했다면 귀하는 종결 적요서에 그러한 증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종결 적요서 견본은 부록 D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청문 후

청문이 끝나면 행정법 판사는 10일간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판결 기간은 귀하가 이의 제기를 요청한 후 80일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 판결문 견본은 부록 E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 행정법 판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간결한 일상 용어로 작성
- 사실 관계 요약 포함
- 행정법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한 증거에 관한 진술 포함
- 청문 요청서에 수록되어 청문 중 제시된 모든 사안 또는 질문에 대한 판결 포함 그리고
- 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해 진술.

청문회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 청문회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2장, 랜터만법에 의거한 제반 권리(Rights Under the Lanterman Act)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6301Ch12.pdf>

**섹션 2: 부록**

## **부록 A: 공정한 청문 플로우 차트**

**공정한 청문 요청 조건:** (1) 지역 센터에서 본인 동의 없이 IPP 서비스 또는 지원을 삭감, 축소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2) 서비스 또는 지원 요청을 지역 센터가 거부하는 경우, (3)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자격 없음 또는 자격 상실 통보를 받는 경우, 공정한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받고 계신 서비스나 지원을 지역 센터에서 삭감, 축소 또는 변경하려고 합니까?**

예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문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최종 행정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서비스 또는 지원이 계속 제공됩니다. 질문 2로 이동

아니요 > 지역 센터에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로 이동

**질문 2: 선택 사항인 비공식 미팅을 원하십니까?**

예 > 지역 센터는 청문 요청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비공식 미팅을 개최해야 합니다.

비공식 미팅을 개최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지역 센터의 결정서가 요청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질문 3으로 이동

아니요 > 선택 중재에 관한 질문 4로 이동하십시오.

**질문 3: 지역 센터의 결정에 만족하십니까?**

예 > 공정한 청문 요청의 철회 의사를 지역 센터에 밝힙니다. 비공식 미팅 결정문에서 상호 합의된 서비스는 철회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상황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아니요 > 선택 중재에 관한 질문 4로 이동하십시오.

**질문 4: 선택 중재를 원하십니까?**

예 > 지역 센터에서 중재를 수락했습니까? 5 일 이내에 지역 센터에서 중재를 수락해야 합니다.

중재를 수락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청문 요청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를 개시해야 합니다. 질문 5 로 이동

지역 센터에서 5 일 이내에 중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은 공정한 청문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6 으로 이동

아니요 > 공정한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으로 이동

#### **질문 5: 중재 결과, 합의를 도출했습니까?**

예 > 공정한 청문 요청의 철회 의사를 지역 센터에 밝힙니다. 서면 결의안에서 상호 합의된 서비스는 철회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상황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아니요 > 공정한 청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으로 이동

#### **질문 6: 공정한 청문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 판사가 타당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지역 센터에 청문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0 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을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청문 시한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 마지막 날로부터 평일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공정한 청문 판결을 내려야 하며 다만 청문 최초 요청일부터 기산하여 8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Medi-Cal Home** 및 커뮤니티 기반 면제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 서비스인 경우 청문 요청 후 90 일 이내에 **DHCS** 에서 판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판결을 채택 또는 거부하거나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로 이동

아니요 > OAH 에 연락해 공정한 청문에 대한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공정한 청문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예 > 공정한 청문의 판결에 따라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니요 > 90 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행정 직무집행 영장(Writ of Administrative Mandamus)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 또는 개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원이 이의 제기를 심리하는 동안 선임한 변호사가 법원의 서비스 계속 명령을 받지 못하면 지역 센터는 10 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 또는 축소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록 B: 판사 기피 신청서 견본**

팩스 (213) 555-5555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Susan Formaker

Presiding Administrative Law Judge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320 W. Fourth Street, Suite 630

Los Angeles, CA 90013

회신: 절대적 기피

John Doe 대 지역 센터 간 소송건

OAH No. 201511100000

청문일: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Formaker 판사님 귀하,

본인은 2015년 9월 28일 John Doe 건을 심리할 다른 판사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John Doe를 대신해 씁니다. 현재 배정된 판사는 Sarah Smith입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1편, 1034조와 미국 연방정부규정집 제11425.4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경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진술 자료를 동봉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다면 (213) 555-5555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 / 42

안녕히 계십시오.

Jane Doe

첨부



Jane Doe 의 진술

John Doe 의 모친

본인 Jane Doe 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1) 본인은 해당 미결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모친입니다.
- 2) 청문회에 배정된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 본인의 아들이 Sarah Smith 판사 앞에서 공명정대한 청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진술서는 캘리포니아주법에 의거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2015년 9월 2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서명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Jane Doe

**부록 C: 원고 측 증인 명단 및 증거 목록의 견본**

성명

세부 주소

시, 주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지역 센터 고객의 이름]의 수권 대리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해당 사안의 주체:

원고의 성명,

원고

및

지역 센터,

서비스 기관

판례 번호:

청문일:

청문 시간:

청문 장소:

행정법 판사:

## 원고 측 증인 명단 및 증거 목록

### 증인 명단

- 1) 증인 (성명)은(는) [증언할 내용을 설명할 것]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 2) 증인 (성명)은(는) [증언할 내용을 설명할 것]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소환 중입니다.
- 3) 예 (성명): (성)씨는 원고의 발달장애, 목표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 증거 목록

- 1) 모두 변론 적요서
- 2) 청문 문서 자료
  - a.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서비스 요청서
  - b.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거부 통지서
  - c.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청문 요청서
  - d. 청문 통지서
- 3)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 4)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의 이력서
- 5)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프로그램 이름을 기입할 것]의 경과 보고서
- 6)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프로그램 이름을 기입할 것]의 경과 보고서
- 7)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평가자 이름을 기입할 것]의 정신 감정 평가 보고서
- 8)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IPP
- 9) [날짜를 기입할 것]일자 [성명을 기입할 것]의 진술서
- 10) 주지의 사실에 대한 랜터만법의 제반 조항

**부록 D: 원고 측 종결 적요서 견본**

**Bill X**

세부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신하는 원고의 아버지 **Bill X**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해당 사안의 주체: 판례 # 2015000000

**SALLY X**, 원고의 청문 적요서

원고

대

지역 센터,

서비스 기관

일자: 2015-09-12

시간: 오전 10:00

장소: Regional Center, 5555 Road St., City, CA 90000

**I. 문제점**

**Sally X**가 학제를 통해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 상담 서비스 재정을 지역 센터에서 계속 공급해야 할지 여부.

## II. 소개

Sally X 는 지역 센터의 수요자로서 14 세의 미성년자이며 특수교육학생입니다. Sally 는 뇌성마비 장애인이며 2015 년 8 월에 척추골 융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교육구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데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 때문에 Sally 와 그녀의 가족은 교육 상담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큰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2010 년 1 월, Donald Cole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가 끝난 후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분투하는 Sally 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면 Sally 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고 판단했습니다. Sally 가 필요한 언어 치료를 받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돌봄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IEP 미팅에서 Sally 를 대변하고 그녀가 속한 교육구의 IEP 진행 경과를 모니터하며 그녀의 가족에게 조언을 제공할 담당자로서 지역 센터(RC)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 상담 전문가의 도움은 Sally 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 III. 논점

**A. 지역 센터는 SALLY 의 IPP 에서 확인된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SALLY 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모든 지역 센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인 프로그램 계획(IPP)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서는 수요자 개인과 그 가족의 요구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6 조. IPP 의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센터는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 조(a)항. IPP 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들은 “변호 지원”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512 조(b)항.

Sally X 의 가장 최근 지역 센터 IPP(2015 년 8 월 27 일)에서는 Sally X 의 가족이 그녀의 교육구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녀의 요구들을 각 영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Sally의 IPP에 따르면 그녀는 보행 능력이 없으며 두 팔의 기능적인 운동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데다 모든 자조 활동(self-care)에서 신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변비, 호흡곤란 및 발작 병력 등의 건강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Sally의 IPP에서는 Sally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IPP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Sally 자신이 본인의 신체를 조절하면서 두 손을 사용해 직접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언어 치료와 특수 체육 교육을 활용합니다. Sally의 IPP에서 확인한 것처럼 학교는 Sally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Sally의 가족은 적절한 학교 교육 서비스를 얻기 위해 교육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RC는 Sally를 위한 IPP 서비스로서 교육 상담 전문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지역 센터는 SALLY의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일반적인 자원들을 SALLY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지역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교육구를 포함)을 파악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59 조(a)항(1)호.

RC는 Sally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자원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Sally의 가족은 현재 Sally의 IEP에서 적절한 분량의 언어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Sally는 척추골 융합술을 받은 후 휠체어에 앉은 자세가 크게 바뀌었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더욱 편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호흡 조절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lly의 현재 교육구는 그녀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언어 치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Sally의 교육 상담 전문가는 Sally가 언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ally가 학교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지역 센터에 서비스를 요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RC는

교육 상담 전문가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학교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언어 치료의 일반적인 자원을 Sally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ally는 자기 자신을 돌볼만큼 건강하지 않은데다 신체 능력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의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녀가 학교에서 원하는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돌봄이 없다면 Sally는 학교에 출석할 수조차도 없을 것이며, 취학 연령대의 지역 센터 수요자에 대한 주요 서비스 공급원을 눈 앞에 두고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Sally의 교육구는 그녀의 신체적 요구들을 충족하지 못해 그녀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정확한 서비스를 Sally의 IEP에 반영하고 이 IEP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Sally의 교육 상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C. 지역 센터는 SALLY가 그녀의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 상담 서비스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원칙적으로 “3~17세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교육 서비스가 수요자의 발달 장애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사회적 영향들을 개선하기 위한 1차적 수단 내지 주요 수단에 속할 경우 혹은 수요자의 가정에서 수요자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며 수요자의 제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 서비스의 비용을 예외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의 5조(a)항(3)호 및 (c)항.

RC는 WIC 제 4648의 5조에 의거해 Sally가 이용하는 교육 상담 서비스의 재정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4648의 5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RC가 교육 상담 서비스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요청된 서비스들은 종래의 관점에서 볼 때 3~17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2) 요청된 서비스가 3~17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Sally 는 이용 제한 면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가 아니므로 SDRC 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lly 의 가족이 요청하는 서비스는 종래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재원을 통해 Sally 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 또는 지원 제공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재정 위기에 대응하여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 의 5 조는 일반적인 재원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을 지역 센터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을 특별히 적용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들이 지역 교육구에서 교육을 대신 받아야할 때 수요자들의 교육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역 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Sally 의 가족은 해당 교육구의 업무를 수행할 다른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급할 것을 RC 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Sally 가 자신이 속한 교육구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데 도움을 줄 교육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Sally 의 가족이 요청한 서비스는 올바른 일반 재원을 출처로 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Sally 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제 4648 의 5 조의 제반 목적을 충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 의 5 조는 Sally 를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금하지 않으며, RC 는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 재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육 상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더라도 SALLY 는 이용 제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육 상담 서비스가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더라도 Sally 는 서비스 유료 이용 권한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요청한 이 서비스가 교육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데다 신체적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Sally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없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센터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는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 공급원인 셈입니다. Sally의 가장 최근 IPP에서는 그녀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IPP는 Sally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녀의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P에서는 Sally의 언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언어에 대한 “결과”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Sally가 현재 학교에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포크를 집어 스스로 식사를 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체육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가 IPP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Sally가 자신이 속한 교육구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은 Sally가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누군가 그녀의 IEP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Sally의 학교는 처음엔 Sally가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교내 화장실을 개조하기를 거부했으며, 다만 그녀의 교육 상담사가 개입할 때에만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Sally는 6학년 내내 장폐색 증세에 시달렸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학교 측이 (휠체어를 끌어줄만한 보조 교사 등의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Sally의 휠체어를 충분히 잦은 빈도로 화장실까지 끌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교육 상담사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Sally가 학교 서비스를 통해 장애를 개선하려면 적어도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는 있어야 하며, 그녀의 교육 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Sally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할만큼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 해당 교육구에서 그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Sally는 뇌성마비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언어 치료 및 특수 체육 교육 등 교육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Sally X의 가족은 Sally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육구와 투쟁해야 했으며, 이러한 투쟁을 통해 비로소 교육 상담사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상담 서비스는 Sally의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상담 서비스에 대한 Sally의 요구를 충족할만한 대안적인 서비스 공급원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648의 5조에서 가장 명확하게 기대하고 있는 1명의 수요자에 대한 일반적 내지는 “대안적”인 서비스 공급원은 바로 수요자의 교육구입니다. Sally의 교육구는 적절한 서비스를 그녀에게 거듭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교육 상담사의 목적은 해당 교육구로 하여금 Sally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설득 또는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특수 교육 문제에서 학생들을 지지하는 여타 중재 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지만 정작 Sally를 위한 그 밖의 지원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Sally와 그녀의 가족은 현재 그녀를 맡고 있는 교육 상담사와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이 상담사가 RC에서 그들에게 배정한 RC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 상담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Sally가 지금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신입 직원은 무엇보다도 Sally의 성장 배경부터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것이며, 아무래도 해당 신입 직원은 Sally의 현재 상담사만큼이나 Sally의 요구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중재인은 Sally가 자신의 교육구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분투했던 시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혹은 현재 Sally의 교육 상담사와 교육구의 업무 관계에 따른 이득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Sally의 다음 번 IEP 미팅은 2015년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Sally는 이 IEP 미팅과 이후의 모든 후속 미팅 일정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중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언어 치료를 놓고 Sally와 교육구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다름 아닌 **Sally** 의 현재 교육 상담사에게 있다는 사실이며 실제로 이 상담사는 이미 해당 문제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Donald Cole** 행정법 판사의 2010 년 판결 내용을 보면, **Sally** 가 처한 상황이 특이하며 그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육 상담사의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된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Sally** 의 요구 사항은 장기적인 교육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 IV. 결론

**Sally X** 는 중요한 일반 자원 즉, 교육구를 통한 특수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지역 센터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 상담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RC** 는 **Sally** 를 위한 이러한 (교육 서비스의) 일반 자원을 계속 확보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Sally** 가 이용하는 교육 상담 서비스가 3~17 세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RC** 는 이러한 재정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ally**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교육 서비스로 간주되더라도 **Sally** 는 교육 서비스 유료 이용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서비스가 **Sally** 의 장애에 따른 영향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 어떤 대안적인 공급원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C** 는 **Sally X** 에 대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제출자:

**Bill X**

**Sally X** 의 아버지

날짜:

**부록 E: 행정 청문회 판결**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OAH 제 2015000000 호

교육 상담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건

당사자: **SALLY X**

(원고)

및

지역 센터,

서비스 기관.

**판결문**

미 캘리포니아주 청문행정처 소속의 **Mary Smith** 행정법 판사는 2011년 9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본 건을 심리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인 **Bill X**는 공정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원고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Ryan M** 씨는 해당 지역 센터(**RC**) 서비스 기관의 대표였습니다.

구두 및 문서상의 증거 자료를 접수했으며 본 건은 2011년 9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쟁점

1. 원고의 교육 상담사에게 재정을 지원할 권한을 서비스 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 4648 의 5 조에 의거해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요건이 존재하는가?

## 사실 확인

### *사법권상의 문제*

1. 2011년 7월 5일, RC는 원고 측 교육 상담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내용의 조처안 통지서를 원고 측에 전달했습니다. 2011년 7월 25일, RC는 R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 측의 공정한 청문 요청을 접수했으며 본 이의 제기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의 서비스 이용 자격과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2. 원고는 중증 뇌성마비 및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14세의 여성입니다. 이전의 행정 청문에 따른 결과로서 공표된 2010년 1월 7일 법원 명령에 따라 RC는 현재 Sally의 개인 프로그램 계획(IEP)에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매월 16시간의 교육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랜터만법과 지역 센터*

3. 랜터만 발달장애인서비스법(약칭 '랜터만법')의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WIC) 제 4500 조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캘리포니아주 발달서비스부(DDS)는 랜터만법에 의거해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의 보호, 양육 및 치료와 관련된 법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하의 담당 공공기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416 조) 법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DDS는 "평생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발달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이른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s, RC**)"로 알려진 시설 비영리 커뮤니티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20 조)

5. 수요자들에 대한 지역 센터의 책임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40 조~제 4659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 년 랜터만법 수정안(2009 Amendments to the Lanterman Act)*

6.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전례없는 예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DDS** 를 포함한 주 정부의 모든 영역은 이러한 재정 위기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에서 기존 랜터만법을 수정한 내용의 의안 **9(AB 9)**가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에 추가된 제 **4648** 의 5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009 년 7 월 1 일 발효된 정반대의 법률 또는 규정을 이루는 여타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할 지역 센터의 권한은 개별선택예산(**Individual Choice Budget**)을 집행하기 전에 보류해야 하며, 이미 집행한 개별선택예산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을 차감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주 정부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발달서비스부(**DDS**) 장관이 증명하기 전에 보류해야 한다.

(1) 캠핑 서비스 및 관련 여행 경비.

(2) 사회성 레크리에이션 활동(커뮤니티 기반의 데이 프로그램으로 판매되는 활동은 제외).

(3) 3 세 – 17 세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4) 특수 레크리에이션, 예술, 댄스, 음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 비의료적 치료.

(b) 개인 프로그램 계획(IPP) 또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의 일환에서 상기의 (a)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센터 수요자들의 경우, 상기 (a)항의 금지 요건은 2009년 8월 1일에 발효한다.

(c) 해당 서비스가 수요자의 발달 장애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사회적 영향들을 개선하기 위한 1 차적 수단 내지 주요 수단에 속할 경우 혹은 수요자의 가정에서 수요자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며 수요자의 제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없다고 지역 센터에 판단할 경우에는 상기 (a)항에서 확인된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면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조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수요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례별로 이러한 결정을 각 지역 센터와 사실심리관에게 맡기기 위해 수요자의 발달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1 차적 수단 내지 주요 수단"을 의미하는 것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청문회에 제출된 증거*

7. RC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인 Warren W 는 원고(Sally)가 최근 다른 중학교에 출석하기 시작했으며 원고가 제기한 문제들은 이전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 상담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고의 현재 교육 상담사인 Deborah P 가 RC 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과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RC 측이 Deborah 의 서비스를 활용할 의사가 더 이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Deborah 가 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 재정을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8. 원고 측 부모는 원고의 교육구를 상대로 벌였던 서비스 분쟁에 대해 믿을 수 있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증언했으며, IEP 에 요약된 바와 같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해당 교육구가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담사인 **Deborah P** 가 원고(**Sally**)의 제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다 원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원고의 **IEP**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새로운 학교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IEP** 에 요약된 모든 필수 서비스를 아직까지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해당 교육구는 현재 원고의 언어 서비스에 관하여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 *평가*

9. 원고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48 의 5 조 (c)항에 따른 면제 요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증거의 우위를 근거로 하여 입증되었습니다. 교육 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사유든 간에 원고 측의 교육구는 원고의 교육에 있어 다루기 힘든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이며, 오로지 **Deborah P** 의 행동을 통해서만 협조했던 것입니니다. 이제 **Deborah** 의 교육 상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원고와 그 가족에게 매우 불리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니다. **RC** 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면제 요건을 규정하는 이 법원의 이전 명령을 번복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위해 제반 상황의 충분한 변화를 규명하지 않았습니니다. 경과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해 **RC** 와 **Deborah P** 간의 모든 문제는 내부 서비스 제공자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경과 보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Deborah P** 의 청구 비용 변제를 **RC** 에서 보류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건에서 원고를 배제함으로써 원고를 징계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니다.

### 법적 결론

#### *입증 책임*

1. 통상적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 소송에서는 적극적 항변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대체로 증거의 우위에 따른 설득 책임을 포함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McCoy v. Board of Retirement(1986)** 183 Cal.App.3d



1044, 1051-1052.) RC 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규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랜터만 법(Lanterman Act)*

2. 주 의회는 연령이나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각 생애 단계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각 개인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히 완성된 형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른바 '랜터만 발달장애인서비스법'으로 알려진 종합적인 법제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제의 목적은 크게 2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와 이들 장애인이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예방 내지는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발달장애인들이 동일한 연령대의 비장애인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보다 독립적이면서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지체자 시민 연맹) 대 캘리포니아주 발달서비스부(1985) 간 소송, 38 Cal.3d 384, 388.) 원고 측이 요청한 서비스 중에서 원고의 건강 상태와 대비해 부당하거나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만한 서비스는 전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당수 서비스들은 IEP 에 근거하여 제공해야 했으며, 교육구 측은 여전히 불명확한 내용의 제반 사유에 근거해 그러한 서비스를 이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3. 랜터만 발달장애인서비스법의 관련 조항들은 사실 확인(Factual Findings)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교육 상담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사유가*

#### *존재*

4. RC 가 원고를 위한 교육 상담 서비스의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증거의 우위를 근거로 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제한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명령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4648 의 5 조 (c)항에 따른 원고 측의 서비스 이용 제한 면제 요청을 인정합니다. RC 는 원고 측의 교육 상담 서비스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날짜: 2011 년 9 월 23 일 금요일

MARY SMITH

행정법 판사

청문 행정처

#### 참고 사항

본 판결은 최종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소송 당사자 양측은 본 판결의 구속력을 받습니다. 각 당사자는 90 일 이내에 적법한 관할법원에서 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liforni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을 참조하십시오.*